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베스타스자산운용㈜

2. 조치일 : 2019. 5. 23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 용
기관	경영유의사항 4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외부용역계약에 대한 관리 철저

베스타스자산운용㈜은 2016.4.18.~2017.6.29. 기간 중 자신이 운용하는 ◎개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 또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(금융투자업자, 보험회사 등) ○개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고유재산으로 총 △차례에 걸쳐 ▲▲▲▲백만원을 자문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,

자문업체 선정 및 자문수수료의 산정 기준, 자문 결과물에 대한 평가 후 반영 기준 등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자문수수료 지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은 미비되어 있는바,

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금융자문계약 및 그에 따른 자문수수료 지급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2) 고문계약 체결 및 운용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

베스타스자산운용㈜은 2015.1.1.~2018.3.31. 기간 중 ◎◎◎◎◎◎(기관투자자), 금융

회사 등의 퇴직 임직원 출신 고문 △명을 위촉하여 1인당 연간 ▲▲▲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, 일부 고문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및 차량을 임차하여 제공하였으나,

고문의 업무수행 내역을 관리 또는 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문위촉시 자격요건, 직무범위, 보수기준 등 고문의 위촉 및 경비지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되 있지 아니한바,

고문료 지급·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고문의 활동실적을 기록·유지하는 등 고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

(3) 재산상 이익 제공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

금융투자협회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제2-6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, 제공내용 등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록·보관하여야 하나

베스타스자산운용㈜은 일부 재산상 이익 제공내용 등은 기록·보관하지 않고 있으며, 임직원이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사용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사전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, 경조비 및 화환 제공시 징구 받아야 할 신청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바,

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의 기록·보관을 충실히 하는 한편,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위법성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

(4) 부동산펀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

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물건의 선정과 실사, 감정평가 등을 거쳐 펀드설정 시까지 통상 2~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최초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투자위험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나,

베스타스자산운용㈜은 투자참여기관에 대한 투자의향서 발송단계에서 부동산 실무 전문가 등을 포함한 투자심의회 등을 구성·운영하지 않았으며, 최종 펀드 설정단계에서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를 서면심사로 1회만 개최하는 등 투자대상 선정 과정에서 투자위험을 검토할 수 있는 내부절차가 미비되어 있으며,

위험관리기준은 제정되어 있으나, 부동산펀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부 위험관리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,

향후에는 투자의향서 발송단계부터 투자심의회를 조기에 운영하는 등 위험관리 심사 절차를 체계화하고,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는 세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